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고시 제2020 - 호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 1. 개정 이유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 이용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박 항행 최고속력 제한, 항법과 항로 변경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일부가 항계 바깥 구역인 신항 가덕수도와 최고속력 지정 근거 법령은 「해사안전법」 제31조이나, 현행 규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기입(안 제1조, 제17조)

나. 충돌 위험성이 높은 해역의 항법·항로 변경(안 제8조, 제12조)

다. 선박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한 신항 내 최고속력 제한과 부산항 전체 최고속력 표기 방식 명확화(대지속력으로 통일), 남외항 정박지 시설 능력 조정(안 제3조, 제17조)

라. 기타 자구 수정(항행, 통항 등 → 운항으로 통일: 제12조 제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시 제2020 - 호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과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부산항 항계 내에서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을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로 “부산항 및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와 정박지”를 “부산항과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 정박지”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는 별표3”을 “「선박입출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5항”을 “「선박입출항법」 제37조”로 “지정한 장소라 함은”을 “지정한 장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을 “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태풍내습 또는 기상악화(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가 예상될 때에는 모든 선박은 항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의 결정에 따라”를 “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로 중앙의 오른쪽으로 항행”을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

쪽에서 운항”으로 “수로횡단 등의”를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부두물양장”은 “5부두 물양장”으로,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상의”를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북항 내항방과제 내측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을 “북항 내항방과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항행”을 “운항”으로 “기상상태, 화물적재 상태, 선박의 톤수”를 “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로 같은 조 제4호 중 “통항”은 “운항”으로 “기상상태를 감인”을 “기상을 감인”으로 “항행”을 “운항”으로 “항로 중앙부 중심”을 “항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교행”을 “교차하여 운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호 중 “예·부선이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할 경우 1척”을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부선은 1척”으로 “결속하여 항행”을 “결속(結束)하여 운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호는 “신설”한 사항으로 신·구조 문 대비표를 참고

제9조 중 “항행”을 “운항”으로 “중앙의 오른쪽으로 항행”을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밧”을 “와”로 “주항로상 출항항로”를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항하여야 한다.”를 “입출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1조 중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는”을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로 “항행”을 “운항”으로 “안전속력으로 항행”을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으로 한다.

제12조는 “(부산신항 항법)”을 “(신항 항법)”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가덕수로”는 “가덕수도”로 “모든 선박은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에”를 “관제 대상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 관제에”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은 신항 가덕수로를 따라 입항 또는 마산, 진해, 충무항 방면으로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 또는 가덕도 등대 방면으로 항해하는 선박은 출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를 “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출항로 바

깎 해역을 이용하여 항해할 수 있으나,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 호에서”를 “각 호로”로 “해역에서는 유선업을 목적으로”를 “해역에서 유선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조도와 오류도 최남단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과 검역묘지 중 다음을 제외한 구역”을 “나암 최남단(N 35-05-49.10, E 129-07-7.14), 조도 방과제 동측 끝단(N 35-04-45.05, E 129-06-18.91), 조도 방과제 서측 끝단(N 35-04-43.12, E 129-05-51.35), 조도 동측(N 35-04-45.70, E 129-05-44.74)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과 검역묘지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에”를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 중 “부산항대교 내측 해역 중 N35-6-57.96 E129-3-19.15 지점과 부산항대교 D호 충돌방지등을 연결한 선의 남측 해역”을 “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다목 중 “제4항로(다만, 북내항에서 제1항로로 진출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를 “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영도 최남단에서 두도 남단을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 수역을 제외한 해역”은 “두도 최남단(N 35-02-49.40, E 129-00-56.40)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수어말에서 당강말에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정박지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을 “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0, E 129-01-29.6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남외항 2번 정박지 경계선까지 해역”으로 나목 중 “영도 최남단에서 부산남항 항계에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정박지(남외항 1번, 3번, 4번)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에서 부산 남항 항계 동측 지점(N 35-04-50.13, E 129-0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남외항 1번, 3번) 경계선까지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은 운항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선내의 해역과”를 “선의 북측 해역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가덕수로”를 “가덕수도”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유선”은 “유선사업자는”으로 “다른 선박의 교통에 방해”를 “다른 선박 운항을 방해”로 “설정구역을 향해 시 주의해서”를 “설정구역에서 주의를 하여”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유선 항행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을 “제1항에서 정한 유선 항행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으로 하고 다음을 추가한다.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에서”를 “각 호로”하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며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사전에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수역으로는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상의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 금지수역은 1천톤 이하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에 대해서는 통항을”을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 금지수역에서 1천 톤 이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의 운항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 호의”를 “각 호”로 “선박과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은 통항을 허용”을 “선박과 군함,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운항을 허용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통항”을 “운항”으로 한다.

제17조 “(속력제한)”을 “(속력 제한)”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에 따라”를 “「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과 「해사안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항행”을 “운항”으로 “별표 4”를 “별표 5호”로 “구역의 지정속력은”을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로 “이 고시에서 정한 속력 외에 별도로 속력제한을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를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가덕수로”를 “가덕수도”로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경찰용 선박 및 단속, 오염방제, 항로표지관리 목적의 관공선”을 “경찰용 선박, 단속·오염방제·항로표지관리 목적 관공선”으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18조는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를 “(해양사고 조치)”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을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 항행”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조치”를 “제1항의 조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정박지

① 작업 및 대기

명칭	위치(경위도)	시설능력(G/T,척)	정박지 위치도
E-1	N 35-06-11.1, E 129-02-58.9	5,000이하 또는 5,000미만 ×1	
E-2	N 35-06-22.1, E 129-03-10.9	10,000이상 × 1	
O-2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5-46, E 129-04-06 2. N 35-06-00, E 129-04-17 3. N 35-05-22, E 129-04-30 4. N 35-05-40, E 129-04-50	3,000미만 × 4	
M-7	N 35-05-21.1, E 129-04-55.9	10,000미만 × 1	
M-8	N 35-05-14.1, E 129-05-11.9	10,000이상 × 1	
M-9	N 35-05-02.1, E 129-05-27.9	∕	
수영만 (S-1)	N 35-08-51.1 E 129-08-26.8	10,000이하×1 (반경200m)	

② 작업 및 대기

명칭	위 치(경위도)	시설능력 (G/T,척)	정박지 위치도
N-1 (남외항 1)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4-35.1, E 129-02-00.0 2. N 35-04-35.1, E 129-02-21.5 3. N 35-04-01.7, E 129-03-11.1 4. N 35-04-01.7, E 129-02-03.9	1,000 미만×8	
N-2 (남외항 2)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4-35.2, E 129-01-35.5 2. N 35-04-35.2, E 129-01-53.4 3. N 35-03-10.8, E 129-01-52.4 4. N 35-03-10.6, E 129-01-02.2 5. N 35-03-41.3, E 129-01-29.7 6. N 35-04-26.9, E 129-01-29.7	3,000 미만×7	
N-3 (남외항 3)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4-01.7, E 129-02-03.9 2. N 35-04-01.7, E 129-03-11.1 3. N 35-02-55.9, E 129-04-48.2 4. N 35-02-39.5, E 129-02-13.5	1,000 미만×2 1,000~3,000×5 3,000~10,000×11	
N-4 (남외항 4)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2-39.5, E 129-02-13.5 2. N 35-02-55.9, E 129-04-48.2 3. N 35-02-09.6, E 129-05-23.7 4. N 35-01-36.7, E 129-02-38.1	3,000~16,000×4 16,000~24,000×4	
N-5 (남외항 5) 부산항 항계 외곽해면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1-36.7, E 129-02-38.1 2. N 35-02-09.6, E 129-05-23.7 3. N 35-00-11.3, E 129-04-48.1 4. N 35-00-11.5, E 129-02-38.1	10,000~30,000×7 80,000 미만 또는 80,000 이하×2	

명칭	위치(경위도)	시설능력 (G/T, 척)	
전체 구역 (신항)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1-13.1, E 128-54-21.8 2. N 35-00-38.0, E 128-55-07.0 3. N 35-00-08.5, E 128-55-14.5 4. N 34-59-24.1, E 128-51-31.6 5. N 35-00-10.4, E 128-51-18.9 6. N 35-00-22.1, E 128-52-28.5 7. N 35-00-52.6, E 128-52-20.9		
W-1	N 35-00-21.0, E 128-53-45.0	80,000이하 × 1	
W-2	N 35-00-28.5, E 128-54-33.0	80,000이하 × 1	

U-1	N 35-00-00.0, E 128-51-44.2	30,000이하 × 1	
U-2	N 35-00-06.5, E 128-52-22.0	30,000이하 × 1	
U-3	N 35-00-14.0, E 128-53-01.5	30,000이하 × 1	
U-4	N 35-00-42.0, E 128-52-50.5	30,000이하 × 1	
U-5	N 35-00-49.0, E 128-53-30.5	30,000이하 × 1	
U-6	N 35-00-54.0, E 128-54-10.0	30,000이하 × 1	

【별표 2】 정박금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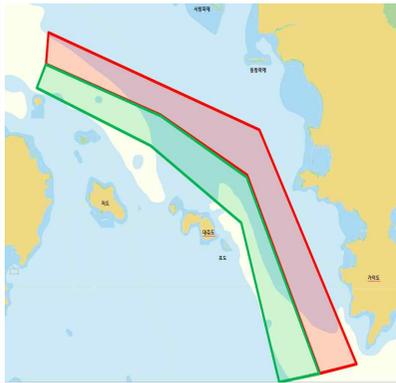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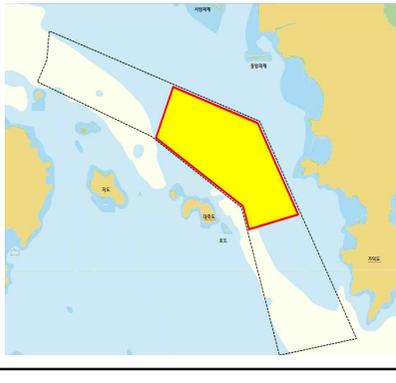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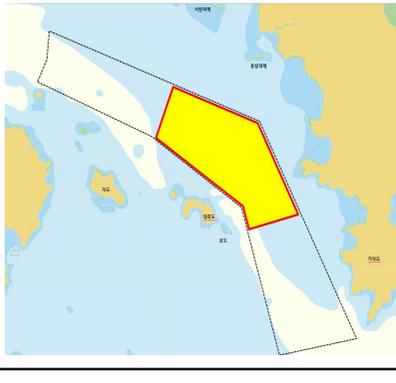
구역	위치	정박금지 구역도
남외항 및 감천항 입출항 구역(적색)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 35-02-42.0 E 129-01-52.0</li> <li>2. N 35-02-39.5 E 129-02-13.5</li> <li>3. N 35-01-40.2 E 129-02-36.9</li> <li>4. N 35-01-25.8 E 129-01-21.0</li> </ol>	

【별표 3】 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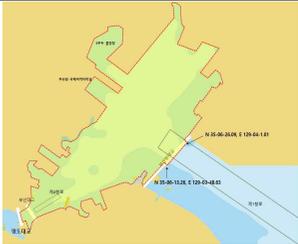
항로별	항로구역	항로구역도
제1항로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 35-06-21.2 E 129-03-39.8</li> <li>2. N 35-04-38.6 E 129-06-35.9</li> <li>3. N 35-04-12.2 E 129-06-50.8</li> <li>4. N 35-04-42.1 E 129-07-09.8</li> <li>5. N 35-04-45.8 E 129-06-46.9</li> <li>6. N 35-06-30.2 E 129-03-47.9</li> </ol>	
제2항로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 35-05-05.5 E 129-01-58.0</li> <li>2. N 35-04-49.6 E 129-01-58.2</li> <li>3. N 35-02-39.5 E 129-02-13.5</li> <li>4. N 35-02-42.0 E 129-01-52.0</li> <li>5. N 35-04-47.7 E 129-01-53.6</li> <li>6. N 35-05-09.8 E 129-01-52.7</li> </ol>	
제3항로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전체항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 35-04-11.2 E 128-59-59.7</li> <li>2. N 35-03-28.2 E 129-00-01.9</li> <li>3. N 35-03-10.1 E 129-00-11.5</li> <li>4. N 35-02-57.5 E 129-00-25.7</li> <li>5. N 35-02-44.7 E 129-00-36.9</li> <li>6. N 35-02-48.3 E 129-00-54.7</li> <li>7. N 35-03-03.2 E 129-00-30.6</li> <li>8. N 35-03-30.6 E 129-00-16.8</li> <li>9. N 35-04-11.2 E 129-00-09.4</li> </ol>	
	<p>(입항항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E 35-02-48.3 E 129-00-54.7</li> <li>2. E 35-02-15.9 E 129-01-41.3</li> <li>3. E 35-01-54.2 E 129-01-32.5</li> <li>4. E 35-02-27.0 E 129-01-00.0</li> </ol> <p>(출항항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 35-02-27.0 E 129-01-00.0</li> <li>2. N 35-01-21.7 E 129-01-22.4</li> <li>3. N 35-01-16.6 E 129-00-56.6</li> <li>4. N 35-02-44.7 E 129-00-36.9</li> <li>5. 삭제</li> </ol>	

항로별	항로구역	항로구역도
제3항로	(분리대: 붉은색 삼각형) 1. N 35-02-27.0 E 129-01-00.0 2. N 35-01-54.0 E 129-01-32.7 3. N 35-01-25.8 E 129-01-21.0	
제4항로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5-57.7 E 129-02-31.9 2. N 35-05-47.8 E 129-02-19.7 3. N 35-05-46.1 E 129-02-20.7 4. N 35-05-56.4 E 129-02-33.4	
제5항로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2-27.0 E 128-46-14.3 2. N 35-03-30.6 E 128-46-46.9 3. N 35-03-52.0 E 128-46-49.0 4. N 35-03-51.18 E 128-47-27.24 5. N 35-03-16.92 E 128-47-10.69 6. N 35-02-44.47 E 128-47-10.78 7. N 35-02-03.12 E 128-47-32.33	

【별표 4】 가덕수도(입출항항로)

항로별	항로구역	항로구역도
중앙 분리선 (붉은 선)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N 35-02-53.4 E 128-43-16.3 2. N 35-02-12.4 E 128-45-30.0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N 35-01-26.4 E 128-47-18.8 2. N 34-58-31.8 E 128-48-33.7	
입항항로 (적색)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안쪽 해면 1. N 34-58-41.5 E 128-49-19.5 2. N 35-02-01.4 E 128-47-37.8 3. N 35-03-19.5 E 128-43-23.5 4. N 35-02-53.4 E 128-43-16.3 5. N 35-02-12.4 E 128-45-30.0 6. N 35-01-26.4 E 128-47-18.8 7. N 34-58-31.8 E 128-48-33.7	
출항항로 (녹색)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4-58-21.4 E 128-47-46.1 2. N 35-00-52.9 E 128-47-01.0 3. N 35-01-46.6 E 128-45-19.3 4. N 35-02-28.5 E 128-42-59.9 5. N 35-02-53.4 E 128-43-16.3 6. N 35-02-12.4 E 128-45-30.0 7. N 35-01-26.4 E 128-47-18.8 8. N 34-58-31.8 E 128-48-33.7	
주의해역 (노랑색)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1-07.2, E 128-48-05.4 2. N 35-02-01.2, E 128-47-37.5 3. N 35-02-37.0, E 128-45-42.3 4. N 35-01-47.4, E 128-45-18.7 5. N 35-00-53.0, E 128-47-01.3 6. N 35-00-23.2, E 128-47-10.2  ※ 특정조건: '선박이 밀집되거나 교차 항해의 우려가 있는 해역' 으로 별표5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안에서 항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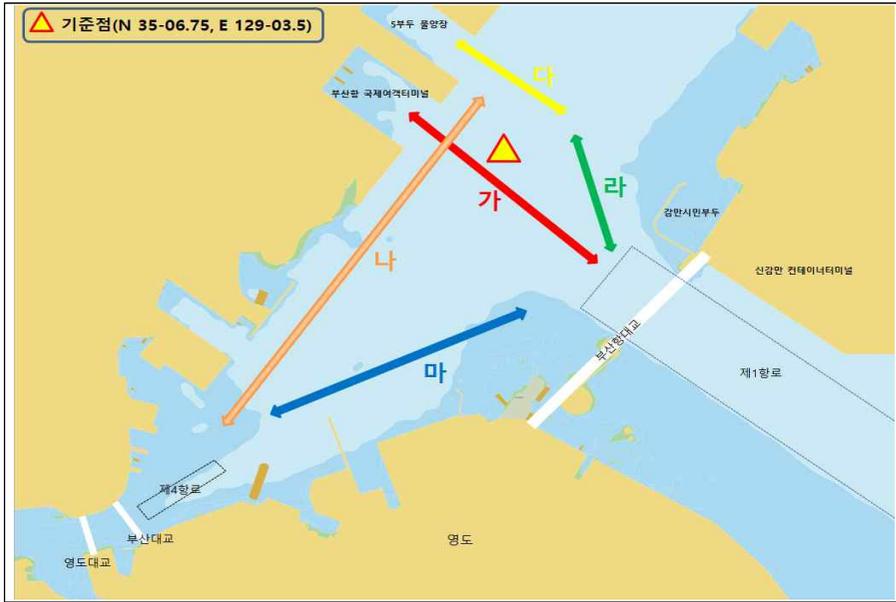
[별표 5] 항행 최고 속도

구역		대상 선박	항행 최고 속력 (대지속력)
1. 부내항 두 지점(N 35-06-13.26, E 129-03-48.63와 N 35-06-26.09, E 129-04-10.1)을 연결한 선과 영도대교 사이 해면		총톤수 500톤 미만 여객선	12노트 이하
		기타 모든 선박	8노트 이하
2. 북외항 두 지점(N 35-06-13.26, E 129-03-48.63와 N 35-06-26.09, E 129-04-10.1)을 연결한 선과 두 지점(N 35-05-22.4, E 129-04-30.2와 N 35-06-13.4, E 129-04-30.2)을 연결한 선의 인접 해면		1,000톤 이상 선박	8노트 이하
3. 오륙도방파제와 조도방파제 인근 좁은 수로		모든 선박	8노트 이하
4. 감천항 동·서 방파제 인접 해면		모든 선박	10노트 이하
5. 다대포항 해경 정비창 방파제 ~ 낮개 방파제 인접 해면		모든 선박	7노트 이하

6. 신항 3부두 서측 끝단(N 35-04-39, E 128-47-06)과 호남도 북서측 끝단(N 35-03-51.19, E 128-47-27.20)을 연결한 선의 동측 해면		모든 선박	12노트 이하
7. 가덕수도(입출항항로) 주의해역		모든 선박	12노트 이하

[별표 6]

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 운항 항법



② 감만부두 동측안벽 통항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항계 내에서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 제한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부산항 및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와 정박지(이하 “부산항”이라 한다)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과 「해사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b>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b>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b>부산항과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 정박지(이하 “부산항”이라 한다.)</b>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p>
<p>제2장 정박지와 항로</p> <p>제3조(정박지) 「선박입출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박지는 별표1과 같다.</p> <p>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 금지구역은 별표2와 같다.</p> <p>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항로는 별표3과 같다.</p> <p>제6조(수리장소) ① 「선박입출항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라 함은 별표 1 정</p>	<p>제2장 정박지와 항로</p> <p>제3조(정박지) -----(이하 생략.)</p> <p>제4조(정박금지구역)----- (이하 생략.)</p> <p>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b>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와 같다.</b></p> <p>제6조(수리 장소) ① 「선박입출항법」 제37조에 따라 선박 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는----- (이하 생략.)</p>

현행	개정안
<p>박지 중 “N-5” 정박지를 말한다.</p> <p>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장소에서 기상상태, 선박의 크기, 해상조건 등을 이유로 선박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b>기상, 선박 크기, 해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장소에서</b> 선박수리가----- (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항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항법</p>
<p>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부산항에서의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b>부산항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 관제에 따라야 한다.</li> <li>2.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li> <li>3. 태풍내습 또는 기상악화(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가 예상될 때에는 모든 선박은 항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항 내에서 운항하는 <b>관제대상 선박은 선박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b></li> <li>2. <b>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b></li> <li>3. <b>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의(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b></li> </ol>
<p>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p>	<p>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 (이하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횡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2. 5부두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상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b>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li> <li>2. 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b>따른</b></li> </ol>

현행	개정안
<p>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과제 내측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p>	<p>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과제 <b>안쪽</b>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b>여객선과</b>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b>운항</b>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오륙도 방과제 또는 조도방과제 인근 수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상태, 화물적재 상태, 선박의 톤수·전장·폭·높이, 항세, 수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통항을 제한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오륙도 방과제 또는 조도 방과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b>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전장·폭·높이, 항세, 수심</b>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b>운항</b>을 제한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부산항대교 아래는 해수면 기준 높이가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통항 가능하며, 부산항대교를 통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상태를 감안하여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통항할 경우 항로 중앙부 중심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행할 수 없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부산항대교 <b>아래에서</b> 해수면 기준 높이가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b>운항</b> 가능하며, 부산항대교를 <b>운항</b>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b>기상을 감안</b>하여 안전하게 <b>운항</b>하여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b>운항</b>할 경우 항로 <b>중앙부를 중심으로</b>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b>교차하여 운항</b>할 수 없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예·부선이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할 경우 1척(부선 포함)만 예인할 수 있으며, 선박을 결속하여 항행하여야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b>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부선은 1척(부선 포함)만 예인</b>할 수 있으며, <b>선박을 결속(結束)하여 운항</b>하여야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li> </ol>

현행	개정안
	<p>다만, 가목이외에는 권고사항으로 한다.(신설)</p> <p>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우선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끝단과 평행하게 100m 간격을 띄운 다음 폭 200m 이내의 가상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p> <p>다. 5부두 물양장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준점을 좌현에 멀리 두고 가능한 침로 125도로 운항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우현을 부두에서 100m 간격을 띄우고 가능한 침로 305도로 운항하여야 한다.</p> <p>라. 5부두 물양장과 제1항로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 끝단 (N 35-06-21.2 E 129-03-39.8, N 35-06-30.2 E 129-03-47.9)과 기준점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의 오른쪽에서 가능한 침로를 000도, 180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p> <p>마. 제4항로에서 제1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대교 쪽으로 근접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9조(남항 항법)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 및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항로상 출항항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항하여야 한다.</p> <p>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는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협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p> <p>제12조(부산신항 항법) ① 제5항로와</p>	<p>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에서 무리한 횡단, 불필요한 행위 등은 피하여야 하고, 야간에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한다.</p> <p>7. 감만부두 동측 안벽과 신선대 부두 사이를 출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1(N 35-06.218, E 129-05.421)과 기준점 2(N 35-06.218, E 129-05.487)사이, 입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2를 좌현에 두고 상대 변침각이 90도가 되도록 운항하여야 한다.(신설)</p> <p>제9조(남항 항법)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을 ----- (이하 생략.)</p> <p>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협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p> <p>제12조(신항 항법) ① 제5항로와 가덕</p>

현행	개정안
<p>가덕수로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② 선박은 신항 가덕수로를 따라 입항 또는 마산, 진해, 충무항 방면으로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 또는 가덕도 등대 방면으로 항해하는 선박은 출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p> <p>③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출항로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해할 수 있으나,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운항금지구역</p> <p>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박 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해역에서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p> <p>1. 조도와 오륙도 최남단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과 검역모지 중 다음을 제외한 구역</p>	<p>수도를 이용하는 <b>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b> 따라야 한다.</p> <p>② <b>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b></p> <p>③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p> <p>④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운항금지구역</p> <p>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박 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b>유선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b></p> <p>1. <b>나암 최남단(N 35-05-49.10, E 129-07-7.14), 조도 방파제 동측 끝단(N 35-04-45.05, E 129-06-18.91), 조도 방파제 서측 끝단(N 35-04-43.12, E 129-05-51.35), 조도 동측(N 35-04-45.70, E 129-05-44.74)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과 검역 장소(「검역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b></p>

현행	개정안
<p>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나. 부산항대교 내측 해역 중 N35-6-57.96 E129-3-19.15 지점과 부산항대교 D호 충돌방지등을 연결한 선의 남측 해역</p> <p>다. 제4항로(다만, 북내항에서 제1항로로 진출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p> <p>2. 영도 최남단에서 두도 남단을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 수역을 제외한 해역</p> <p>가. 수어말에서 당강말에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정박지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p> <p>나. 영도 최남단에서 부산남항 항계에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정박지(남외항 1번, 3번, 4번)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p> <p>다. 제2항로</p> <p>3. 감천항의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과 제3항로</p> <p>4. 제5항로와 가덕수로</p> <p>5.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p> <p>② 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은 입·출항 또는</p>	<p>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따라야 한다.)</p> <p>나. <b>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b></p> <p>다. <b>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b></p> <p>2. 두도 최남단(N 35-02-49.40, E 129-00-56.40)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p> <p>가. 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0, E 129-01-29.6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남외항 2번 정박지 서측 경계선까지 해역</p> <p>나.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에서 부산 남항 항계 동측 지점(N 35-04-50.13, E 129-0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남외항 1번, 3번) 동측 경계선까지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은 운항할 수 있다.)</p> <p>다. 제2항로</p> <p>3. <b>감천항</b>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b>선의 북측 해역과</b> 제3항로</p> <p>4. 제5항로와 가덕수도</p> <p>5.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p> <p>② 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b>유선사업자는</b> 입·출항</p>

현행	개정안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설정 구역을 향해 시 주의해서 운항하여야 한다.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 <b>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b>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b>설정 구역에서 주의를 하여</b> 운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유선 항행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더 등의 선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유선 <b>운항</b> 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더 등의 선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b>(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다.)</b>
④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b>각 호로</b>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을 30일 <b>이내 기간을</b>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b>유선사업자</b> 는 사전에 <b>청장</b>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구역으로는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상의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 금지구역은 1천톤 이하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에 대해서는 통항을 허용한다.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 <b>선박입출항법</b> 」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b>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b> 다만,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 금지구역 <b>에서 1천 톤 이하 선박</b> 과 항만공사용 <b>부선의 운항은 허용</b> 한다.
1. 삭제 2.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과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예정지 사이 구역) 가. N 35-04-38.9, E 128-47-06 나. N 35-04-35.5, E 128-47-05.5 다. N 35-04-21.1, E 128-46-49 라. N 35-04-07.6, E 128-46-49 마. N 35-03-52, E 128-46-49 바. N 35-03-31.2, E 128-46-41.88	1. 삭제 2.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과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예정지 사이 구역) 가. N 35-04-38.9, E 128-47-06 나. N 35-04-35.5, E 128-47-05.5 다. N 35-04-21.1, E 128-46-49 라. N 35-04-07.6, E 128-46-49 마. N 35-03-52, E 128-46-49 바. N 35-03-31.2, E 128-46-41.88

현행	개정안
제15조(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①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은 통항을 허용한다.	제15조(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① 다음 <b>각 호</b>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하는 선박과 <b>군함, 경찰용 선박</b>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소유 선박은 운항</b> 을 허용한다.
1.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2.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3.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1.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2.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3.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을 통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을 <b>운항</b> 하고자 하는 선박은 <b>청장</b>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잔교 운항금지) 모든 선박은 잔교 하부에 진입할 수 없다.	제16조(잔교 운항금지) 모든 선박은 잔교 하부에 진입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17조(속력제한) ① 「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산항을 항행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4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안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의 지정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제17조( <b>속력 제한</b> ) ① 「 <b>선박입출항법</b> 」 <b>제17조제3항과 「해사안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b> 부산항을 <b>운항</b> 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b>별표 5로</b>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b>운항</b>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b>구역에 지정된 속력</b> 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	② 다음 <b>각 호</b>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b>선박교통관제센터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b> 적용하지 아

현행	개정안
<p>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한 속력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li> <li>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li> <li>3. 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로 주의해역만 해당)</li> <li>4. 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및 단속, 오염방제, 항로표지관리 목적의 관공선, 도선선</li> <li>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li> </ol> <p>제18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조치를 취한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 사실과 조치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나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니한다. 다만, 이 <b>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b>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li> <li>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li> <li>3. 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b>가덕수도</b> 주의해역만 해당)</li> <li>4. 군함(군사작전), <b>경찰용 선박, 단속 · 오염방제 · 항로표지관리 목적</b> 관공선, 도선선</li> <li>5. <b>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b></li> </ol> <p>제18조(해양사고 조치) ① <b>부산항에서</b> 해양사고가 일어나 <b>선박이 위험하거나</b> 다른 선박 항행 안전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b>제1항의</b> 조치를 취한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나 <b>선박교통관제관서</b>에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